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실시 계획 및 「은행간 시장 관행·인프라 개선방안」후속조치

2023.12.21일

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

- ◆ '24년 1월 시작되는 시범운영을 앞두고 '시범운영 실시 계획'을 안내하고, 보도자료 발표(11.8일)* 이후 확정된 사항 등을 발표
 - *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「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」
- ◆ 외환당국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7월 정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"시범운영 TF"를 가동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
- ◆ 금일 발표한 내용은 시범운영 기간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1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시범운영 실시 계획

- □ (일정) 개장시간 연장시 발생할 수 있는 전산·회계·재정이슈 등을 사전에 점검·보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실시
 - ① **('24.1월~) 외국 금융기관**(RFI)가 참여하여 실제 거래 시작, 기본적으로 現 개장시간 유지(9:00~15:30)
 - ② ('24.2~6월) 총 12회에 걸쳐 익일 2:00까지 실거래 테스트* 실시
 - * 예 : 사전에 테스트를 실시할 상대방을 정해 동일 환율로 100만불씩 주고받는 거래

【 실거래 테스트 일정(안) 】

구분	실거래 테스트 날짜	총 횟수
′24.2월	2.15(목), 2.22(목)	2회
′24.3월	3.14(목), 3.21(목)	2회
′24.4월	4.19(금), 4.22(월)	2회
′24.5월	5.23(목), 5.24(금)	2회
′24.6월	6.4(화), 6.5(수), 6.13(목), 6.14(금)	4회

※ 4.23일(화) : 英 성조지의 날 / 5.27일(월) : 美 메모리얼 데이 / 6.6일(목) : 韓 현충일

- □ (상품별 실거래 테스트) 현물환은 2월부터, FX스왑은 4월부터 실시 □ (대상) RFI 신용공여 약정체결 대상 기관(31개) 중 연장시간대 야간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인 국내 기관은 의무 참여(그 외는 자율 참여) o 참여기관은 테스트 직전 월까지 사전계획서 제출*, 사전계획서 제출 기관에 한정하여 사전 협의된 거래만 테스트 허용 * 예 : (2월 거래) 1월말까지 제출, (3월 거래) 2월말까지 제출 □ (거래상대방) 의무 실시기관들은 거래가 가능한 RFI 및 의무 실시기관과 사전에 협의(규모, 플랫폼) 후 실거래 테스트 실시 □ (시간대) 최소 두 구간 시간대(^①런던장, ^②한국 새벽)에 거래 검증 ○ 월 **단위로 모든 의무 거래상대방**과 실거래 테스트 필요 * (2~5월) 월별 2회 동안 모든 대상과 거래 (6월) 4회 동안 모든 대상과 거래 15:30 18:00 21:00 24:00 **●**런던장 20한국 새벽 자율 □ **(보고)** ^{①<거래전>}시범운영 계획서 제출(직전 월까지) ②<거래후>**체크리스트** 제출 □ (거래방식) API 전용선, 인터넷*(GUI, WTS), 보이스 등 모두 활용 가능
 - * <u>Graphic User Interface</u>: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 <u>Web Trading System</u>: 인터넷에서 웹 사이트 등 접속을 통해 거래
 - 각 기관간 및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**이용가능한 거래방식 선택**
- □ (시범운영 TF) 보완사항 논의, 애로해소 등을 위해 실거래 테스트 기관, 외국환중개사 등이 참여하는 "시범운영 TF" 운영 예정
 - **구체적인 시범운영 실행 방식** 등도 시범운영 TF를 통해 논의

2 「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」후속조치

※「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」및「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」개정안은 12.21일 총회에서 발표하고 연말까지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

1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외환시장 관행 개선

(1) 외환시장 거래질서 확립

- □ (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설치) 「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」개정*을
 통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치
 - 이상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준* 제시, 자율위원회 운영지침** 마련 및 예방교육에 중점
 - *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, 당국은 거래질서 감독시 참고
 - ** 딜링룸 내 개인휴대폰 소지 여부, 시장질서 교란행위(권고사항) 기준 제시· 선별·자율심의·당국 앞 의견 개진 등
 - 24년부터 반기 1회 및 필요시 개최

<참고1>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설치 관련「회칙」개정내용

- (구성) ①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*
 - ② 본점 권역(아시아·오세아니아, 유럽, 미주)별로 거래량 상위 1개 외은지점 지명 위원 (단, 동 기관이 ①의 위원이 속한 외은지점과 동일지역 소재시 제외)
 - ③ 지방은행, 기타금융기관(증권사) 거래량 상위 1개사 소속 위원
 - ④ 외국환중개사(1개사, 현물환중개사 제외)** 지명 위원
 - ⑤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한 기관의 소속 위원
 - * '회장,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소속 위원' 추가
 - ** 현물환 중개 인가기관 이외의 중개사 중 외환스왑거래 중개점유율 8% 이상 (매년 '가나다' 순번제로 1개사만 구성원으로 인정)
- (역할) ① 「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」점검 및 개정 건의
 - ②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연구 및 논의
 - ③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협의회 구성원 대상 교육
 - ④ 「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」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

- □ (이상거래·호가 모니터링) 당국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현물환중개사 (SMB, KMB) 앞 "시장질서 교란행위 모니터링 화면" 개발을 요청
 - 일별로 이상거래 및 호가주문·취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에 소명을 요구할 계획

(2) 외환 거래·결제일 기준 정립

- □ (외환거래 인식) 개장시간(09~익일 02시) 중 은행간 시장 거래에 대한 거래·보고·회계처리일 원칙 정립
- ⇒ 현재 **금융감독원**에서 회계처리일 정립을 **검토 중**이며 추후 확정 예정

(3) Cut-off time 도입

- □ (對고객 당일결제 현물환거래 Cut-off time) 당일 결제 對고객 현물환 거래는 17시 이내*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 - *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소액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(17시 이후 거래)는 각 은행이 상황에 따라 결정
 - 한은금융망 마감시각(17:30분)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당일 자금 이체가 가능한 對고객 현물환 거래 마감시점 결정
 - 향후 필요시 Cut-off time을 앞당기는 방안 검토
- □ (Tom Swap Cut-off time) Tom Swap 거래(근일물이 익일)의 경우 22시 이전은 CLS, 22시 이후 Tom Swap 거래는 Non-CLS 결제 권고
 - 검토 결과 CLS 결제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익일 CLS 결제대상 거래의 제출시간* 연장은 어려움**(금융결제원)
 - * CLS공동망 운영시간은 07:45~22:30분(서머타임 기간은 06:45~22:30분), CLS 공동망 제출 cut-off time은 22시
 - ** <참고> 제3자 기관의 Tom Swap 거래의 금융결제원 앞 제출기한은 여타 국가에 비해 긴 편임(일본은 16시~17시 전후 마감)

(4) 시간대별 평균환율 제공

- □ (시간대별 원/달러 평균환율) 매시 및 15:30분 정각 직전 10분 동안 거래된 시간가중평균환율(TWAP, Time Weighted Average Price)
 - 중개사별로 10분 동안 10초 간격으로 체결된 가격을 단순평균한 다음 양사의 평균화율을 단순평균
 - 집계 시점에 체결된 가격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먼저 체결된 가격
 - 매 10초 정각에 체결가 없으면 직전 체결가를 사용하며, 10초
 이내 직전 체결가 없으면 Null값 처리(산출 데이터에서 제외)
 - ㅇ 향후 필요시 시간가중평균환율 산출 방식 변경 등을 검토
 - ⇒ 현물환중개회사 양사간 고시화면 관련 협의 및 데이터 교환·확인 관련 전산개발 등을 거쳐 정보 제공 예정

<10시 TWAP 산출예시 >

						_
	서울외국환중개			한국자금중개		
	09:50:00 09:50:10 09:50:20 09:50:30 10:00:00	1,323.0 1,323.2 1,323.1 1,322.9 1,321.0		09:50:00 09:50:10 09:50:20 09:50:30 10:00:00	1,323.0 1,323.2 1,323.1 1,322.9 1,320.0	
	,	,		,		J
10분간 TWAP (1,32	2.45	+	1,32	2.41) ÷ 2 = <u>1,322.43</u>

2 안정적 외환거래 환경 조성 및 거래질서 관리

(1) 전자거래규약(API Rulebook) 도입

- □ (전자거래규약) 건전하고 효율적인 API 활용을 위해 운용지침 도입
 - ㅇ「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」제27조 전자방식의 거래 제5호 신설

"5.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전자거래시스템의 호가 최소 유지시간, 1초당 호가 제시 횟수 제한, 환율 급변동시 사이드카 적용 등의 전자거래에 필요한 전자거래 규약(API Rulebook)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"

ㅇ 정기적 또는 필요시 검토하여 업데이트

주요 항목	운용 지침
API 호가 최소 유지시간	▶은행들은 호가로 제시한 매입·매도가격을 0.2초 이상 유지
1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	• Quote, Hit 각각 10회 이내(취소 제외)
API Sidecar 도입	▸ 전일 종가대비 3.0%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
개장직후·장마감 전	▶ 각각 15분간 API 적용 중단
API 적용 중단	* 다만 7월 정식 시행 이전에 폐지 여부 검토 예정

(2) 외국환증개 및 거래행태 관리

- □ (국내 외국환증개회사 경유 의무) 중개사를 경유한 원/달러 외환 및 스왑 거래시 당국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가능*
 - * "<붙임 1>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 목록" 참조
 - 단순 사무라 할지라도 외국환중개회사가 인가를 받지 않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협업하는 것도 불허
- □ (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) 당국은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(15:30~익일 02시)에 한하여 국내 외은지점의 개별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국내 은행의 NDF 전자거래 허용*
 - * [보도자료]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「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」발표(2023.11.8., 한국은행·기획재정부)
 - 허용되지 않은 시간대(02:00~15:30) 또는 다른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

2024년 선도은행 선정 및 대행기관 제도 정비

(1) 2024년 선도은행 선정

3

- □ 선도은행 수 : 7개 이내
 -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('24.7월 예정)에 따라 야간 시간대(15:30~ 익일 02:00) 시장조성이 긴요한 점을 고려하여 선도은행 수 확대

□ 선정기준 : 1~6월은 종전 기준, 7~11월은 개정 기준 적용

ㅇ 각 기간의 평가점수를 외화시장 개장일수로 가중평균하여 산정

	종전	개정 (2024년 기준)
기본 요건	▶ 재무건전성(BIS 8%), 신용도(A-이상)▶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 無▶ 현물환·스왑 거래점유율 각각 2.5% 이상	♪ 좌동♪ 좌동♪ 현물환·스왑 거래점유율 각각 2.0% 이상
평가 항목	▶ 현물환 거래실적 - 양방향 거래	 ▶ 현물환 거래실적 60% - 양방향 거래실적 15% - 호가 거래실적 45% (단, 시장질서 교란의심거래 제외) ▶ FX스왑 거래실적 40% - 만기별 가중치(일수x365/91)

[※] 다만,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·깊이·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 가능

□ 발표 : '24.1월초 예정

(2) 대행기관 확인의무 명확화

- □ 원활한 RFI의 업무대행 수행을 위해 확인의무 가이던스 배포
 - 「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」 제4-1조제3호와 관련 하여 **각 기관의 확인의무 범위를 명확화**하는 **가이던스**(붙임2) 배포
 - ─ 명의 동일성, 송・수금처 등 결제절차별 각 기관이 실제 수행 해야 하는 확인사항 구체화
 - **시장참여자 의견수렴**(12.26(화)까지 외시협 회장단을 통해 제출) 후 필요시 보완하여 차질없는 업무대행 지원

(3) 대행기관을 통한 외환전산망 보고

- □ RFI는 '24.3월말까지 대행기관 지정 및 보고(엑셀 파일 기준) 개시*
 - * 'RFI 등록 이후부터 ~ 대행기관 지정 전까지' 외환거래 내역을 소급 보고
 - 6월말까지 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 준비 완료 및 보고 개시

- RFI의 전산개발 소요시간 및 대행기관 통한 보고 준비시간, 시범 운영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
- □ 시범운영 기간 중 보고 오류 등은 사후 치유를 전제로 제재조치 면제

<참고2>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FX보고서

- □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FX보고서는 총 7개('23.12.15일 엑셀 템플릿 배포)
 - * RFI 업무용 원화·외화계좌 입출금 및 잔액은 국내외국환은행이 기존 FX보고서(FX0018, FX0019, FX0119, FX0118, FX0039)로 보고

FX보고서	보고주체	주요 내용
① RFI의 원화차입 잔액 보고(FX0028) ② RFI의 원화 차입 및 상환 내역 보고(FX0029)	RFI	지정 대행기관과의 원화차입·상환
③ RFI의 F/X거래(FX2101) ④ RFI의 외환파생거래 건별 잔액 보고서(FX2111)	п	RFI로서의 Delivery F/X 거래
⑤ 일중 포지션현황표(FX4410)	RFI , 국내외국환은행/	п
⑥ 일중 외환거래현황표(FX4420)	증권사(旣보고)	
⑦ 외국환은행의 對RFI 선물환포지션(FX4451)	국내외국환은행	對 RFI 선물환포지션 합계만 보고

^{*} RFI의 NDF 포지션 현황 및 선물환포지션 보고는 유예

- o (RFI 원화차입(①, ②)) RFI가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원화차입·상환시 사전 신고를 면제하되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
- (RFI FX거래(③~⑥)) RFI로서 거래한 원/달러 Delivery Spot·Forward· FX Swap을 보고 (CRS, NDF·ND Swap 등은 유예)
 - 거래상대방이 거주자일 경우 인별정보 보고, 비거주자일 경우 인별정보 미보고 (소재지 및 국적은 보고)
 - 범주정보(주체 분류)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

	거래(Flow)	잔액(Stock)
 건별 내역	FX2101 ^{<일보>}	FX2111 ^{<월보>}
신글 네틱	FX0074 ^{<일보>} (중개사)	
총액 집계	FX4420 ^{<일보>}	FX4410 ^{<일보>}

o (외국환은행 對RFI 선물환포지션(⑦)) 보고기관의 對 RFI 선물환포지션 합산한 금액 보고 (RFI별로 보고하지 않으나, CRS 및 NDF·ND Swap 거래도 포함하여 금액 산정)

3 외환시장 구조개선 Portal 페이지 개설

- □ **한국은행 홈페이지** 내 **마이크로페이지*** 개설('24년중 개편 예정)
 - * (국문) http://www.bok.or.kr → '외환·국제금융' → '외환시장운영협의회' → '외환시장 구조 개선 Portal'
 - (영문) bok.or.kr/eng → 'Financial Stability' → 'FX & Int'l Relations' → 'Foreign Exchange System' → 'Appendices' → 'Improvement Measure of FX Market Structure'
- □ **기획재정부 홈페이지** 내 외환시장 구조개선 **마이크로페이지**도 개설 예정('24.1월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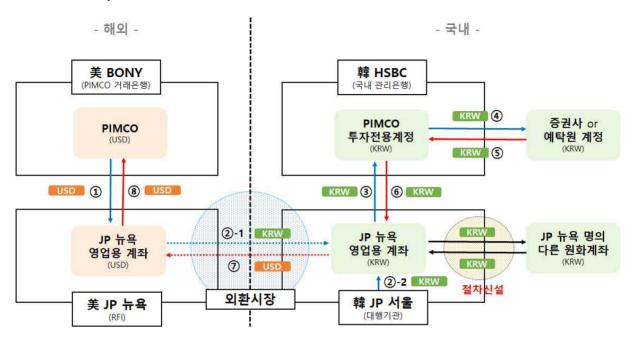
붙임 1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 목록

등록 번호	상호	인가일	본점 소재지	대표번호
1	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	'98.11.23	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12층, 13층	02-3706-8200
2	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	′00.8.2	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	02-6211-8000
3	털릿프리본코리아 외국환중개주식회사	′05.5.23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더존을지타워 6층	02-728-0100
4	지에프아이코리아 외국환중개주식회사	'07.3.5	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0 에나센터빌딩 19층	02-6333-2941
5	니탄캐피탈코리아 외국환중개주식회사	′07.3.5	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빌딩 17층	02-6911-8800
6	트래디션코리아 외국환중개주식회사	′07.4.13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2층	02-2088-5800
7	비지시캐피탈마켓 외국환중개주식회사	′07.5.1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0층	02-2021-8300
8	아이피스 외국환중개(주)	'12.4.25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스서울 동관 11층	02-2021-0000
9	케이아이디비 자금중개주식회사	'12.4.25	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YWCA빌딩 12층	02-311-7500

붙임 2

RFI 결제흐름도 및 절차별 확인의무 범위(안)

□ (사례) 외국인투자자 PIMCO(HSBC 서울에 원화계좌 보유)가 RFI인 JP 뉴욕과의 외환거래를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



×0 140	확인의무			
주요 내용	RFI	대행기관	관리은행	
①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투자자의 외화자금을 RFI 업무용 외화계좌로 송금	명의	_	_	
②-1 외환시장 환전 (USD→KRW)	_	_	_	
②-2 필요시 대행기관으로부터 원화차입	결제목적	결제목적	_	
③ RFI 영업용 원화계좌에서 관리은행의 투자자 명의 투자전용계정으로 원화송금	명의	명의	명의	
④ 증권자금 결제를 위해 투자자 명의 투자전용 계정에서 증권사 계정으로 송금	_	_	송금처	
⑤ 국내 증권매매 차익 및 배당소득을 투자자 명의 투자전용계정에 입금	-	-	자금출처 (④ + 자본·배당소득)	
⑥ 국내 증권매매 차익 및 배당소득을 RFI 영업용 원화계좌로 송금	명의	명의	명의	
⑦ 외환시장 환전 (KRW→USD)			_	
® RFI 본국 외화계좌에서 외국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외화계좌로 외화자금 송금	명의	_	_	